

[붙임1] 재단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채용구비서류가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권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채용 결격사유 사전 자가점검표〉

점검내용		예	아니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중 하나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하나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상기 본인은 채용 결격사유 사전 자가 점검을 마쳤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등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어 임용 취소(당연면직) 되더라도 만형사상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서명)

[붙임2]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

-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가이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가이드에 위반되게 작성한 사항에 대해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 ☐ 교육사항
 - 학교교육은 직무 관련 고등교육 또는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이수 완료한 과목으로 2학점(30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이수 중인 과목 기재 불가)
 - 학교교육은 학점을 시간단위로 환산(1학점 당 15시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전공명이 아닌 1개의 단일 과목만을 기재한 경우에만 인정
 - 예) 대학교에서 3학점 과목인 <○○학개론> 수강 시 교육시간 기재 방법 (인정) 45시간 45 (미인정) 3학점, 3, 3시간 등
 - 주요 미인정 사례) 경영학 900시간, 석사 과정 1600시간 등
 - 직업교육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이수 완료한 직무 관련 직업교육 중 1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만 인정(이수 중인 과목 기재 불가)
 - 교육내용을 교육과정명과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교육명의 일부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등 불성실하게 기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교육사항 증빙서류에는 이수 학점 또는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하거나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과 다를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해외에서 학위 또는 경력을 취득한 자는 공증된 국문 번역본(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및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붙임3]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등 처리 기준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처리 기준

- 불성실 기재 문항은 최저점 부여

☐ 자기소개 불성실 작성 예시

- 블라인드 채용 위반

구분	예시
이름	세종학당재단 무기계약직 채용에 지원한 “김세종”입니다.
성별	책임감 있는 “장녀”로서..., “현역”으로 입대하여...
출신지역	“서울”에서 나고 자라...
나이	“30년”간 살면서...,
가족 정보	“교직생활에 몸담은 어머니”를 보며..., “경찰이신 아버지”에게...
출신학교	“학당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하며...

- 의미 없는 문자, 숫자, 문장 등 나열
- 자기소개서 문항을 자기소개서 내용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 여러 문항에 동일한 답변을 반복 기재
- 기관명 오기(경력사항에 대한 언급이 아닌 타 기관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 복사 붙여넣기 등)
- 자기소개서 항목별 입력 분량의 20% 미만 입력

[붙임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서류합격 예정자 제출서류

- 서류합격 예정자에 한해 추후 안내에 따라 제출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내용 불일치, 관계기관 진위확인 결과 허위사항 발견 시 불합격 처리됨**
- 증빙서류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고 진위 확인만을 위해 활용되므로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만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함(이름, 생년월일 등 나머지 사항은 마스크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유효기간
자격사항	- 지원서에 입력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공고일 이전
교육사항	- 지원서에 입력한 학교성적증명서, 직업교육 수료증 ○ 현재 이수 중이거나, 이수학점, 이수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미인정 ○ 해외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의 경우 증빙서류 원본이나 아포스티유 대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담당자 이메일 주소 또는 홈페이지 URL 주소로 갈음 가능	공고일 이후
사회 형평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 세종학당재단)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국가보훈등록증	기한 없음
	- 장애인증명서 -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또는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본증명서(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 이전 국적 표기)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등)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비수도권 지역인재	- 학사까지의 최종학력 기준 재학, 졸업증명서 등 ○ 가점사항은 아니나 동점자 발생 시 적용을 위해 수집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는 [붙임 6]을 참고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붙임5] 채용 이의 신청서

〈채용 이의 신청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의신청 내용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바라며,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붙임6]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세부 기준

- 가.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적용한다.
- 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채용시험 전형단계(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별로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전 과목에 대하여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 위 '나'에 따른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하 '가점 합격자'라 한다)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세부적용 기준			
1. 전형단계별 가점합격자는 전형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도 합격한 사람은 가점합격자에서 제외한다. 2.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 '1'에 따른 가점합격인원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②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3. 최종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구분(분야)에는 모든 전형단계에서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가점 합격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단, 응시자 수가 최종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종 채용규모	응시자 수	가점합격자	가점합격인원 상한제
3명 이하	최종채용인원 초과	전형단계별 미발생	미적용
	최종채용인원 이하	전형단계별 발생	미적용

[붙임7]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정의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지방 학교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본·분교 여부 조회 가능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다.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